

자동차 보험의 유형별 보상사례

해마다 자동차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비례하여 자동차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도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되어 자동차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 되어 버렸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종합보험이 가입하였다 하여 모든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이므로, 가입자 자신에게는 금전적인 손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손해를 입었으나, 자기 스스로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동차종합보험이 상법 제719조에서 말하는 책임보험의 일종이라는 보험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고, 즉 면책사유에 해당될 때에 보험가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 손해는 보험가입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유는 종합보험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그 사유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몇가지 사례를 설명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이와같은 사례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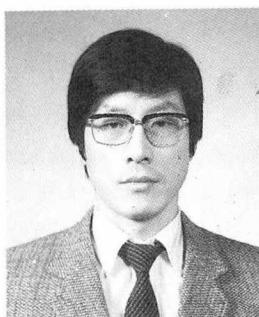
사례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 받아 사용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 유형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그 내용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장 전형적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산 사람이 매매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받았으나, 명의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이다. 또한, 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의 명의도 전차주(양도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 우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검토해 보자.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받았다면, 비록 등록원부상으로는 전차주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차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현차주만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현차주가 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 등).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 현차주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상과 같이 현차주가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자기이름으로 새로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보험자에게 자동차의 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하고 피보험자



김희중
(한국자동차보험(주) 보상과장)



를 변경하는 절차(배서승인이라 함)를 밟아야 한다.

사례2.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자가용자동차에 탑승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주위에서 흔히 직장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영업용택시를 잡기 어려워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장거리 여행을 목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현행 종합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즉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위험의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이므로 종합보험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리

면서 유류대를 지불하거나, 상품을 배달시키면서 유류대, 인건비 등 운송실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지불하는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 요금이나 대가의 성격이 아닌 운송 실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이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버스(승합차)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위험부담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와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화물차)도 특별요율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사례3. 회사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하여 회사소유 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출퇴근시 회사소유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부상한 경우.

회사의 피용자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에 재해를 입으면 근로기준

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8조이하)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업무를 위하여 자기회사 소유자동차에 탑승하고 가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당연히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회사소유 자동차 운전사의 운전상 과실을 근거로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 배상책임(또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즉 선택적으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아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개인용 종합보험약관 제10조-④ 등).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자동차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각종 보상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위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88다카29177. 89. 11. 14 선고, 대법원 85다카 1211호 85. 5. 8 선고). 다시 말하면 업무상재해는 통상 자동차사고의 위험과는 그 위험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에서 부담할 영역에 속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부담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